

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

송윤아 연구위원

요약

-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로,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나 이상사고를 냈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함. 이로써 경찰이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의심해 볼만한 기회를 상실함. 「도로교통법」상 경찰신고의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교통사고의 80% 이상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채 보험처리로 종결됨.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으로 교통사고 경찰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 경찰인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- ■■ 최근 부산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로, 과거에도 세 차례 나 이상사고를 냈으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함으로써¹⁾, 경찰이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의심해 볼만한 기회를 상실함.
 - ☞ 「도로교통법」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운전면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자는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함(법 제88조).
 - 동법에 따르면 뇌전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임(법 제82조, 시행령 제42조).
 - 수시적성검사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
 가진 경우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.
 -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정신질환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음(법 제90조).
 - 치매, 정신분열병, 분열형 정동장애, 양극성 정동장애, 재발성 우울장애, 정신발육지연, 뇌전 증, 마약·대마·향정신적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이 이에 해당함.

¹⁾ 중앙일보(2016, 8, 2), "부산 해운대 교통사고,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환자?…과거 3차례 교통사고",

- - 「도로교통법」제5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 등은 사고가 일어난 곳,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,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.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.
 - 다만,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함.
 - 그러나 1991년 대법원은 "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만 해당한다"
 고 판시함.
 - 대법원 판례 이후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, 중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신고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보험처리로 종결하는 경향이 있음.
- 「도로교통법」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는 비정상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경위 파악을 통해 가해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및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음.
 - 최성혜 외(2014)에 따르면, 치매진단을 받은 운전자 272명 중 1년 후에 108명에 대해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는데.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환자가 59명(54.6%)에 이름 ³⁾
 - 일본에서는 고령자·치매 환자의 역주행 등으로 인한 이상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4)
-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인식하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⁵⁾. 이러한 방안의 비용이 적지 않음.
 -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 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함(법 제89조 제1항).
 -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, 정신질환 또는 시력 장애로 징집 면제된 자,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자 등이 있음.⁶⁾
 -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는 사생활 침해의 비용이 따름.

²⁾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면 교통사고 신고율은 더 낮아짐.

³⁾ 최성혜 외(2014), 「치매 환자들의 운전실태: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 연구」, 『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』, vol. 13 no. 4, pp. 83~88.

⁴⁾ MBC(2016. 1. 16), "日 고령화에 '치매 운전' 늘어…75세 이상 운전자 치매검사".

⁵⁾ 연합뉴스(2016. 8. 2). "警. 뇌전증 환자 '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' 대상 확대한다".

^{6) 「}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58조 제2항 관련 별표4.

- 2002년 경찰청은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총 진료일수가 180일 이상인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한 바 있음.
-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감한 의료정보 공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청 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.
- 또한 치매, 정신질환, 뇌전증, 알콜중독증 등이 있는 자는 편견과 불이익으로 인해 질환은폐 및 진료 기피 경향이 있어.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.
 -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, 2011년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.6%, 진료율은 15.8%임.⁷⁾
- 아울러. 수시적성검사의 대상보다는 검사내용이 적격성을 가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음.
- 이에 법상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제도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사고이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전면 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 - 경찰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,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 -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와 경찰 간 사고정보 공유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함. kizi

⁷⁾ 보건복지부(2011), 『2011년도 정신질환 역학조사』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역사업 보고서.